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를 폐지하므로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의3 삭제)
-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위촉의 취소 사유를 해촉 사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안 제3

조제3항)

4.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그 위촉을 취소”를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3(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구성 등)</u></p> <p>① <u>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이 되며, 5인의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부장판사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u></p> <p>③ <u>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④ <u>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u></p> <p>⑤ <u>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조의2제5항의 평가 결과</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결격사유)

①, ② (생략)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

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임 전문심리위원을 해촉-----.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0